오염물질 통합단속 지침마련

환경부는 지난 10월 14일 하나의 사업장내에 대기나 수질, 폐기물, 유독물 등 다수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이들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꺼번에 실시키로 하는 내용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정기점검을 위한 환경부 직원의 사업장 출입 횟수가 크게 줄어들고 사업장의 모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종합적인 점검이 가능해 더욱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 규정은 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단속에 민간단체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4대강 환경감시대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단속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과 환경법령의 상습위반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나 수질 등 오염 매체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단속활동을 벌이는 기존의 단속방식이 해당 사업장에 불편을 주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4일 하나의 사업장내에 대기나 수질, 폐기물, 유독물 등 다수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이들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꺼번에 실시키로 하는 내용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유해 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

환경부는 인체나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유독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독성이 강한 물질만 유독물로 지정해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벤젠이나 톨루엔처럼 유통량과 배출량이 많은 화학물질도 환경기준을 설정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지난 10월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에 위해 우려물질의 목록을 작성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뒤, 2005년부터 유독물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3대강 수변구역 823㎢ 확정

낙동강 등 3대강의 수변구역 지역이 최종 확정됐다.

환경부는 이번 수변구역내에 8개 시·도와 23개 시·군·구를 포함해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면적을 228.77㎢, 금강 373.19㎢, 영산강·섬진강 221.29㎢로 전체 수변구역 범위를 여의도 면적의 약 98배에 달하는 823.25㎢로 지정·고시한다고 지난 9월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변구역내 폐수배출시설을 포함해 공장, 축사, 숙박시설·음식점, 공동주택 등의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또 낙동강·영산강의 상류 유하거리 10㎞ 바깥지역과 금강 특별대책지역외 지역은 음식점·숙박시설, 목욕탕 건축허가기준이 강화돼 현재 이들 업소의 오수정화기준이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SS(부유고형물) 기준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되고 축사의 경우 축산폐수를 전량 퇴비화하거나 축산폐수처리장에 유입해 처리할 경우만 신규입지가 가능하게 됐다.

수변구역내 기존 시설은 수변구역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오수정화 기준이 두배로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번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지역주민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활용, 매년 상수도·의료시설 등 복지증진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및 주택개량 등 직·간접적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이를 위해 낙동강 수계 330억원, 금강 130억원, 영산강 14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팔기를 원하는 경우 수계관리기금 범위내에서 이를 정부가 매입해 녹지로 조성해 오염물질 완충지대의 기능을 담당케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한강에 이어 3대강수계 상수원댐 상류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현재 사후처리 위주인 수질관리정책을 사전예방적 체제로 전환해 오염총량제도를 조기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변구역 지정은 올 1월부터 제정·공포된 3대강 특별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월부터 지자체와 주민이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해 최종 확정한 것으로 해당 시·군에서 수변구역 경계선 도면을 열람할 수 있다.

일선 지자체 하수 이중 정화시스템 각광

전남 담양군이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구 밑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이중 정화시스템"을 도입, 수질 개선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9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영산강 최상류인 담양천의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구밑 둔치에 2천여평 규모의 인공습지와 연못을 설치했다.

군은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곧 바로 영산강으로 흘러들지 않고 자연정화 연못(저수조)과 인공습지를 거치도록 설계했다.

습지에는 수질정화에 효과가 큰 창포와 부들 등을 심고 자연정화 연못에는 자갈과 잔구멍이 많은 구운 황토 등을 깔아 방류수가 그곳을 지나도록 했다.

이 같은 이중 정화시스템을 도입한 후 최근 수질을 측정한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종전 10.9㎖/ℓ에서 2.21㎖/ℓ로, 부유물질(SS)은 12.1㎖/ℓ에서 5.17㎖/ℓ로 크게 줄었다.

또 부영양화를 촉발하는 질소와 인도 12.5㎖/ℓ와 1.5㎖/ℓ에서 2.8㎖/ℓ와 0.307㎖/ℓ로 급감했다.

수질이 크게 개선되자 방류구 주변이나 하류에는 다슬기와 피라미 등 각종 어패류가 서식하고 백로와 왜가리 등 철새까지 날아들어 생태학습장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더욱이 자연정화 방법은 시설비 외에는 유지·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수질 개선효과는 매우 커 하천오염의 효율적인 개선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환경분쟁 1년 만에 3배 증가

환경분쟁 사건이 1년 만에 3배로 급증했다.

지난 10월 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접수된 환경분쟁 사건은 모두 3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8건과 비교해 3배

낙동강 등 3대강의 수변구역 지역이 최종 확정됐다.
환경부는 이번 수변구역내에 8개 시·도와 23개 시·군·구를 포함해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면적을 228.77㎢, 금강 373.19㎢, 영산강·섬진강 221.29㎢로 전체 수변구역 범위를 여의도 면적의 약 98배에 달하는 823.25㎢로 지정·고시한다고 지난 9월 18일 밝혔다.

가까이 늘어났다.

조정위는 이 가운데 184건을 처리하고 12건은 신청인의 철회로 종결했으며 165건은 조정절차를 진행중이다.

올해 처리한 184건을 피해 원인별로 보면 소음과 진동이 155건(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은 대기오염 21건(11%), 수질오염 4건(2%) 등이다.

피해 내용은 정신적 피해가 69%를 차지, 조정위 설립 이후 10년간의 평균치인 47%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건물 피해는 9%에서 2%로 감소했다.

발생 지역은 수도권이 49%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충청권은 14%에서 29%, 영남권은 6%에서 11%로 각각 늘었다.

환경분쟁 사건이 늘어나면서 직원 1인당 처리 건수도 2000년 3건에서 지난해 6건, 올해 12건으로 증가했다.

3대강 특별법으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에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오염총량제 기본방침이 된다.
목표수질 또한 낙동강 수계가 10월중 마련되고 금강·영산강 수계는 12월중 고시돼 2004년 7월부터 낙동강수계 광역시 지역을 시작으로 오염총량관리제가 단계적으로 확대, 2008년께 3대강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직접 한다

경기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규모 미만의 10개 분야 42개 단위사업에 대해 독자적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했다고 지난 10월 7일 밝혔다.

도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제도만으로는 난개발이나 환경파괴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 도 차원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내년 7월부터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건설, 하천 이용, 관광단지 개발, 산지 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 토석·모래·자갈 등 10개 분야 42개 단위사업이다.

도시개발의 경우 국가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12만5천~25만㎡의 아파트지구개발 및 묘지설치, 15만~30만㎡의 대지조성 및 택지개발 등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산업단지의 경우 12만5천~15만㎡의 산업단지개발이나 공장설치, 공업용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 3대강 오염총량 관리

3대강 특별법으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에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오염총량제 기본방침이 된다.

목표수질 또한 낙동강 수계가 10월중 마련되고 금강·영산강 수계는 12월중 고시돼 2004년 7월부터 낙동강수계 광역시 지역을 시작으로 오염총량관리제가 단계적으로 확대, 2008년께 3대강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5일 이 같은 3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물관련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 연구반은 향후 목표수질 설정안에 대한 연구·검토, 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마련, 기본·시행계획 검토, 관련 제도 및 기술사항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오염총량제가 실시될 경우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

된 배출유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량초과부담금을 부과하고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은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이 제한될 방침이다

불량 오수시설 제조업체 적발

환경부는 53개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기준 미달의 불량시설을 만들어 온 19개 업체를 최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환경부 단속결과 경북 영천시 이엠과 충남 보령시 으뜸산업은 제품의 재질과 두께 등이 환경기준에 못 미쳤으며, 경북 구미시 청록산업은 50인까지 가능한 단독정화조를 60인용으로 만들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앞으로 오수처리시설과 단독 정화조는 신고업체에게만 판매 허가를 내주도록 제도를 개선해 불량 환경시설의 제조와 유통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절수기 의무화 단속 내년 6월로 연기

물 다량사용업소의 절수기 설치 의무화와 관련, 홍보부족으로 준비가 소홀한 관련 업체들의 반발이 일자 광주시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단속을 내년 6월로 연기했다.

최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내 목욕탕 353개소, 숙박업소 810개소, 관광호텔 13개소 등 전체 의무설치 대상 업소 1천176개소 가운데 현재 평균 37%만 절수기를 설치하는 등 미설치 업소들이 많아 시행을 8개월 후인 내년 6월로 연기하기로 했다는 것.

내년 5월 팔당호 유입 오·폐수 98% 처리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호 인접 지역에 내년 5월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4곳이 완공돼 팔당호로 유입되는 오·폐수의 98%를 정화처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시(市)에 따르면 지난해 5~11월 모두 107억5천600만원을 들여 조안면 삼봉1리, 삼봉2리, 능내1리, 시우리 등 4곳에 하루 처리용량 200~650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착수했다.

시는 내년 5월 이들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팔당호로 직접 유입되는 오·폐수의 98%를 처리할 수 있게 돼 팔당호 수질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수관거 정비예측모델 개발

환경부는 팔당상류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질개선 성과예측 모델링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지난 10월 1일 밝혔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관거정비사업을 추진공정별로 분석해 나머지 3대강 유역에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수질개선 성과예측 모델링 개발사업은 국립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관거정비사업이 수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내는 국내 최초의 연구사업이라고 환경부는 말했다.

환경부는 53개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기준 미달의 불량시설을 만들어 온 19개 업체를 최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오수처리시설과 단독 정화조는 신고업체에게만 판매 허가를 내주도록 제도를 개선해 불량 환경시설의 제조와 유통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계,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응방안 마련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회장 허동수 LG칼텍스정유 대표이사)는 최근 제1차 산업환경정책분과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열린 분과위원회 참석자들은 지난 7월말 정부가 내놓은 지역배출허용 총량제 실시, 저공해 자동차 제작 의무화, 경유의 황함유 기준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안)을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또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 지속 가능한 산업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새정부에 바라는 지속가능한 산업정책에 대한 정책제안집'을 작성키로 했다.

KBCSD는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경영의 확산을 목표로 지난 3월 21일 출범했으며 산업환경정책분과위원회는 주로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대안을 건의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대구시, 산업단지내 폐수 배출업소 단속

대구시는 산업단지내 대기·폐수 배출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10월 13일 시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이 관리해 오던 산업단지내 환경관리권이 지난 8일자로 대구시로 이관됨에 따라 대기·폐수 배출업소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산업단지 내에 있는 전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별로 원료, 제조공정, 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에 대한 정밀점검을 벌인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분하고 업소별 현황카드를 작성해 앞으로 지도점검과 업소 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산업단지 내에 있는 전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별로 원료, 제조공정, 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에 대한 정밀점검을 벌인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분하고 업소별 현황카드를 작성해 앞으로 지도점검과 업소 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예산 10년만에 처음으로 축소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예산이 10년만에 처음으로 축소돼 정부의 환경보전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9월 24일 확정한 2003년 예산안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내년에 환경부로 배정된 예산은 총 1조3천850억원으로 올해 1조4천336억원과 비교해 3.4%(486억원)가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예산은 낙동강 페놀사건 직후인 지난 93년 1천887억원에서 95년 6천729억원, 97년 1조802억원, 99년 1조1천536억원, 2001년 1조4천143억원 등으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내년도에 축소된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상하수도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올해 3천299억원에서 내년에는 2천432억원으로 무려 26.2%가 삭감됐다.

이에 따라 식수난을 겪고 있는 이들 지역의 정상적인 수돗물 공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우

려된다.

또 강원도 속초와 화천, 홍천, 전북 무주, 전남 완도와 진도, 경남 고성과 진해 등 17개 지역에 건설하려던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계획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업자체가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아울러 분야별 오염물질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1천928억원에서 내년에 1천 780억원으로 7.7%나 삭감돼 환경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환경산업 지원정책도 퇴보의 기로에 놓였다.

자율환경관리협약 규정 제정

앞으로 자율환경관리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각종 보고·검사를 면제받고 중소기업의 경우 방지시설설치자금·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에 우선 융자혜택을 받게 됐다.

또 정부는 이들 사업장의 환경관리·개선을 위한 무상 기술지원과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협약대상분야 심사를 면제하는 등 기업의 자발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종 행정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8일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관리와 지역환경보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을 제정·고시했다.

협약대상은 지구환경오염물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토양오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 분야이며 1분야 이상 협약체결이 가능하다.

자율환경관리협약을 맺고자 하는 기업은 관할 행정구역내 환경여건을 감안해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계획서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협약기업으로 선정되면 매년 이행여부에 대한 현지점검 및 평가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규정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참여, 지역환경 개선 및 자발적인 환경경영으로 선진국형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급증추세

최근 들어 건축물 신·증설에 따른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1년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건수는 총 81만3천112건으로 93년 10만4천525건에 비해 무려 7.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징수금액도 1천204억2천100만원에 달해 93년 대비 212.4%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8년 동안 건축물 신·증설이 연평균 5.4%씩 증가율을 기록, 특히 상업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48% 증가해 5억3천500만㎡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기준도 대폭 확대돼 최초 303평형 이상의 중대형 건축물에만 부과하던 것을 95년부터 48평형 이상으로 완화한 것도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 자율환경관리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각종 보고·검사를 면제받고 중소기업의 경우 방지시설설치자금·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에 우선 융자혜택을 받게 됐다.